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규칙

규정번호	3-3-20
제정일자	2010.03.01
개정일자	2015.09.01
개정번호	Ver.3 총페이지 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칙 제31조의 2에 따라 본 대학 입학 후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 중에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의 인정(이하 “학점인정”이라 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신청인”이라 함은 학점인정을 원하는 자를 말한다.
- ② “이수과목”이라 함은 신청인이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중에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으로 신청인이 이수한 과정을 말한다.
- ③ “취득학점”이라 함은 신청인이 “이수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말한다.
- ④ “인정과목”이라 함은 본 대학의 교육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으로 신청인이 학점인정을 원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제3조 (신청인의 자격) 신청인은 본교 재학생으로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해야 한다.

- ① 군입영을 사유로 휴학 후 복학한 자
- ② 군위탁생 또는 군인 신분으로 수학하고 있는 자

제4조 (학점인정의 기준) ① 이수과목이 인정과목과 동일하거나 동등해야 한다.

- ② 신청인 1인에 대하여 학기당 3학점 이내, 년 6학점 이내에서 본 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③ 이수과목의 학점수가 인정과목의 학점수보다 많거나 같을 경우 인정과목의 학점수로 인정한다.
- ④ 이수과목의 학점수가 인정과목의 학점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 ⑤ 인정과목의 평점은 이수과목의 취득 성적에 따라 인정한다.

제5조 (학점인정 신청 및 자격심사) ① 신청인은 인정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기의 개강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인정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기의 개강이후 복학한 경우에는 복학 즉시 신청하여야 한다.

1. 군교육훈련학점인정 신청서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행된 취득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서
- ② 총장은 ①항의 신청에 대해 학점인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접수일로부

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학점인정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③ 총장은 학점인정자격 심사의 권한을 해당학과 학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 (학점인정의 확정) 신청인은 군교육훈련학점인정신청서에 기재된 인정과목의 강좌에 수강신청한 후 해당학기가 종료되면 학점인정이 확정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업 제406호]

학과장

군 교육 훈련 학점인정신청서

결 재	계	팀 장	부처장	처 장	총 장
				전 결	

소 속						20 학년도	
학 번	성 명			☎ 연 락 처	집 휴 대 폰		
군 교육훈련 학습과목			본 대학 인정과목				
과 목 명	학점	성적	과 목 명	이 수 구 분	학점	성적 (등급)	담당교수
							(인)
							(인)
상기와 같이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div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자 : _____ (인)</div>							
동양미래대학교총장 귀하							
※ 첨부서류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1부.							